

문서번호	건축과-103357
결재일자	2015.7.1.
공개여부	부분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27호

★ 주 무 관	건축관리팀장	건 축 과 장	도시관리국장	부 구 청 장
민혜경	류선균	조남성	최인수	전결 07/01 정연찬
협 조	건축2팀장 건축1팀장	이재복 이상권		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 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및 동법 시행령 제2조(급경사지의 정의)	
사업추진유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팀조 ()
이해관계인유무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자원활용가능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성	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
주택사면(급경사지) 자료정비 계획

추진근거

- 「주택사면 관리 철저 및 자료정비 요청」 [서울시 건축기획과 - 10381(2015.05.20.)호]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[급경사지의 정의]

정비기간 : 2015.07.03.~2015.07.10.

정비내용

- 서울시 주택사면 용역결과 및 「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
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축대·옹벽·석축과 미관리 주택사면을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급경사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자 함

정비대상 : 총 40개소

계	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축대·옹벽·석축	주택사면 용역결과 추가 대상	이첩
40	30	8	2

조치계획

-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(NDMS)에 급경사지로 입력·관리
 -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축대·옹벽·석축 : 급경사지로 변경
 - 주택사면 용역결과(서울시) 추가 대상 : 급경사지로 신규 입력

도시관리국 건축과

주택사면(급경사지) 자료정비 계획

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 및 서울시 주택사면 용역 결과에 따라 주택사면을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급경사지로 변경 또는 신규 입력·관리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주택사면 관리 철저 및 자료정비 요청
(서울시 건축기획과-10381(2015.05.20.)호)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
 - 급경사지
 - 높이5m이상, 경사도32도 이상, 길이 20m이상인 인공 비탈면
 - 높이50m이상,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

II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및 현황

-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에 따른 조치
 - 개정내용 : 축대·옹벽·석축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·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로 관리를 일원화 함
 -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축대·옹벽·석축 → 급경사지로 관리
 - ※ 다만 '13.12.31일 이전 재난위험시설(D·E급)로 지정된 시설은 해소시까지 관리

◆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축대·옹벽·석축
 - ▶ 높이5m, 연장 20~100m 미만의 시설
- ※ '14.2.7일 「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·관리 지침」 개정으로 축대·옹벽·석축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

■ 현 관리실태

-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주택사면(축대·옹벽·석축)은 급경사지로 관리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음
-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주택사면에 대하여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료수정 등 용역결과 반영 미흡

III 추진 계획

■ 급경사지 자료 정비

- 자료입력 : 2015. 7. 3 ~ 7. 10
-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중인 축대·옹벽·석축
 -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(NDMS)에서 급경사지로 변경 입력·관리
- 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 대상(※용역기관 : 서울시)
 -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: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던 축대·옹벽·석축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전수조사하여 용역결과 통보한 사항에 대해 등급조정 등 자료수정 후 관리
 - 미관리 주택사면 : 서울시에서 신규발굴한 주택사면에 대한 용역 결과를 급경사지로 신규 지정·관리

◆ 세부 자료정비 현황(붙임 참조)

- 특정관리대상시설(축대·옹벽·석축) → 급경사지로 변경 : 30개소
- 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결과 신규 급경사지 지정 : 8개소
- 도시재생과 이첩 : 2개소(정비구역)

○ 주요 정비 대상

- 급경사지 D급 지정 대상

연번	시설명	시설위치	현등급	등급	비고
1	옹벽	노량진동 ***	C	D	서울시 정밀조사 (붙임 참조)
2	옹벽	상도동 ***,**	C	D	서울시 정밀조사 (붙임 참조)
3	옹벽	상도동 ***,**	신규	D	서울시 정밀조사 (붙임 참조)

- 급경사지 신규 지정 대상

연번	시설명	시설위치	등급	비고
1	옹벽	흑석동 ***,**	C	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결과(2차)
2	옹벽	상도동 ***,**	C	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결과(2차)
3	석축	상도동 ***,**	C	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결과(3차)
4	석축	신대방동 ***,**	B	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결과(3차)
5	옹벽	상도동 ***,**	C	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결과(3차)
6	옹벽	상도3동 ***,*	D	서울시 정밀조사 (붙임 참조)
7	옹벽	상도4동 ***,**	C	서울시 정밀조사 (붙임 참조)
8	옹벽	상도4동 ***,**	C	주택사면 전수조사 용역결과(미관리)

관리방안

- 연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(급경사지법 제5조)
-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시설물 소유자(관계자)에게 점검결과(위험요인) 통보 및 안전조치 지시
- 정기점검 및 해빙기, 우기, 동절기 등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,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실시

IV 향후 계획

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(NDMS)에 급경사지로 변경·신규 입력관리

급경사지 D등급(3개소) :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·고시(급경사지법 제6조)

도시재생과 이첩 : 2개소(정비구역)

- 붙임 : 1) 주요 정비 대상 1부
 2) 주택사면 자료정비 대상(총괄표) 1부
 3) 정밀진단보고서(D급지정대상 등) 각 1부. 끝.